

# 내부감사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내부감사(이하 “감사”라고 한다)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감사범위 및 감사방법)** ①감사는 회계, 조직, 인력, 학사 기타 모든 업무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②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의 방법에 의한다

**제3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본교의 모든 기관에 적용한다.

**제4조(기구)** 제1조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다음의 기구를 둔다.

1. 감사관

2. 감사위원회

**제5조(감사관)** ①감사를 총괄하기 위해 총장 직속으로 감사관을 둔다.

②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감사계획 수립

2. 이 규정에 따른 감사 실시(사실관계 조사, 자료 수집, 관련자 면담 등)

3. 감사결과보고서 작성

4. 감사결과 보고 및 처분 요청

5. 감사기록 관리 및 보관

6. 기타 감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

**제6조(감사위원회)** ①감사 수행과 관련하여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둔다.

②감사위원회는 감사관을 포함하여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감사관이 된다.

③감사위원회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, 사무직원 가운데에서 감사관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④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⑤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종합감사계획 및 감사결과보고서 심의

2. 피감부서의 협조 의무 해태에 대한 방지 및 조치

3.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 등 사후조치 요구 심의

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6조의2(행정지원부서등)** ①본 규정에 따른 감사 관련 행정업무는 기획조정처 리스크매니지먼트팀(Risk Management 팀, RM팀)에서 담당한다.

②감사관은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내부인력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**제7조(감사의 종류)** ①종합감사는 매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업무에 관하여 총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감사관이 주도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②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대상을 정하여 특정감사를 명할 수 있다.

③이사장은 총장에게 감사 실시를 요청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임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직접 감사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목적과 대상을 미리 총장에게 알려야 한다.

④삭제

**제8조(협조)** ①감사관은 피감사부서와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, 증언, 기타 감사에 필요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.

**제9조(감사관등의 의무)** 감사관, 감사위원 및 감사인은 공정한 입장에서 감사를 수행해야하며,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0조(보고)** ①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 종료 후 20일이내에 감사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사종료 후 즉시 구술로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경우에는 그 감사결과보고서를 이사장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감사결과보고서는 총장이 결재한 후에 이를 수정할 수 없으며 감사관 책임하에 보관한다.

④ 감사결과보고서 및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기록은 비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한다.

**제11조(감사결과처리)** ① 총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피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시정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총장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감사관은 제2항의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차기 감사시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.

## **제12조(상별) 삭제**

### 부 칙

이 규정은 198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